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선	군	수
람		

# 군 보

제504호 2017. 5. 15(월)

## 조 례

○ 진안군 조례 제2280호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발행 진 안 군 (편집 기획실)(063)430-2838)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2/26. 3

2017년 5월 15일

진안군 조례 제2280호

###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마을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 선에서부터 적선거리 100미터 이내 이어야하고 외곽에 위치한 대지 경계 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제3항 제4호 중 "200m"을 "2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축사육시설 이전신축) ① 제3조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절대금지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가축사육시설을 그 지역 밖으로 이전신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이전신축하고자 할 경우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이 위치해 있던 자연마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당초 축사시설은 폐쇄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가축종별 사육 제한거리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적용한다.
2. 축종별 당초축사연면적의 이전신축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축사의 이전조치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가축사육자에게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호(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유효기간) 제3조의2의 신설규정은 그 시행 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호(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전신축 허가신청 중인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 [ 별표 1 ]

## 축종별 축사 연면적(제3조의2 관련)

당초 축사 연면적		이전신축 비율(%)	비 고
소·젖소	500㎡미만	200%	
	500㎡이상~1,000㎡미만	150%	
	1,000㎡이상~1,500㎡미만	130%	
	1,500㎡이상	100%	
돼지·닭·오리 (메추리포함) 양(염소 포함) ·사슴·개·말	당초 축사 연면적	10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u>&lt;신 설&gt;</u>	제2조 (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마을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이어야 하고 외곽에 위치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제한구역) ① · ② (생 략)  ③ 상대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가축 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육제한 거리 측정기준은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1. ~ 3. (생 략) 4. 말 : <u>200m</u> ④ (생 략) <u>&lt;신 설&gt;</u>	제3조 (제한구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200미터</u> 이내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 (가축사육시설 이전신축) ① 제3조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절대금지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가축사육시설을 그  
지역 밖으로 이전신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사육시  
설을 이전신축하고자 할 경우 허  
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존 사축사육시설이 위치해 있던  
자연마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당초  
축사시설은 폐쇄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가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적용한다.
2. 축종별 이전신축비율은 별표1  
과 같다.

#### <신 설>

제3조의3(축사의 이전조치 등)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가축사  
육자에게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또  
는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